시 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3717
결재일자	2023. 7.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07/17
협 조	인사과장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2024년도 장기국외훈련 운영계획

2023. 7.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1.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2. 약자와의 동행				
목 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사 업 개 요 1

Ⅱ 운 영 방 향 2

Ⅲ 2024년도 주요 변경사항 3

Ⅳ 세부 추진계획 5

◇ 운 영 개 요 ····· 5

인 원 및 자 격 ····· 5

선 발 기 준 ····· 8

훈 련 과 정 ····· 9

◇ 선 발 및 파 견 ····· 14

Ⅴ 행 정 사 항 24

◇ 참 고 자 료 ····· 25

1. 총괄심사 기준표
2. 업무추진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표
3. 심층면접 평가표
4. 영어면접 평가표 (Language Proficiency Test Score)
5. 훈련계획서 평가점수표
6. 어학시험별 점수환산표
7. 외국어 말하기(OPIc) 점수환산표
8. 장기국외훈련 파견 복귀 절차
9. 장기국외훈련 세부운영 내용
10. 국외훈련중 보고서 제출 목록
11. 훈련과제 및 유관보직 기준
12. '24년 장기국외훈련 과제 목록(100건)

2024년 장기국외훈련 운영계획

'글로벌 Top 5 도시 서울'을 선도할 전문성과 어학능력을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4년도 장기국외훈련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제37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및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 훈련유형 : 학위과정(2년), 직무훈련(1~2년), 특별정책과정(1년)

○ 추진과정 : 3~4년 소요

선 발	➡	파견준비	➡	파 견	➡	과정관리	➡	성과평가
과제선정 선발·교육		훈련기관 섭외·확정		파견심사·결정		보고서 제출 훈련실태 점검		보고서 평가 보직 관리

○ '23년 선발 결과 : 총 34명(학위 12명, 직무 22명)

- 3급 이상 5명(별도 선발), 4급 7명, 5급 이하 22명

○ '23년 예산 : 4,097백만원

□ 훈련현황('23.6.30.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3급이상	4 급	5 급	6급 이하
합 계	54	8	11	15	20
학 위 과 정	24	-	3	11	10
직 무 과 정	22	8	8	1	5
특 별 정 책 과 정	8	-	-	3	5

Ⅱ ’24년도 운영방향

☐ 추진 목표

- ‘글로벌 TOP 5 도시’ 도약을 위한 핵심 인재 양성
- 해외 훈련기관 파견, 정책교류를 통한 국제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 강화
- 우리 시 발전 경험을 개도국 도시에 전파하여 서울의 국제위상 제고

☐ 운영 방향

- (훈련국가 다변화) 다양한 국제교류 및 지역전문가 양성
- (직무훈련 강화) 해외정부·국제기구 등 실무중심 직무훈련 실시
- (훈련관리 강화) 훈련성과 및 시정활용도 제고

☐ 선발 개요

- 선발인원 : 총 37명(3급 이상 4, 4급 7, 5급 이하 26)
  - 학위과정: 10명(5급 5, 6급 이하 5)
  - 직무과정: 27명(4급이상 일반직무 11, 특별정책 13, 지정기관직무 3)
    - ▸ 일반직무: 11명(3급 4, 4급 7) ※ 3급 이상 4명 별도 선발, 4급의 경우 학위신청자 우선 선발
    - ▸ 특별정책: 13명(5급 이하)

> (미국) 포틀랜드주립大 4 (공공행정2, 사회복지2), (영국) 버밍엄大 3,
> (싱가포르) 국립大(리콴유스쿨) 2, (중국) 대외경제무역大 2, (프랑스) 국립동양언어문화大 2

    - ▸ 지정기관직무: 3명(5급 이하)

> (이탈리아) UN세계식량농업기구 본부, (스페인) 까사아시아*, (페루) 리마사무소
> *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교류를 위해 설립된 스페인 공공기관

- 지원자격 : 7급 이상 경력직공무원으로 ’23.12.31. 기준 만 50세 이하(’73.1.1. 이후 출생), 실제 근무경력 3년 이상 및 市 전입 2년 이상
  ※ 국장급(만 53세, ’70.1.1 이후 출생)
- 선발방법 : 평가점수를 기반으로 서울시 국외훈련심의회 심의를 통해 훈련분야별 경쟁 선발
- 훈련기간 : 2년 이내(단, 특별정책과정 1년)

Ⅲ ’24년도 주요 변경사항

☐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

<table>
<tr><th>구 분</th><th>주요 변경 내용</th></tr>
<tr><td>① 훈련국가 다변화</td><td>○ 파견국가 지속적 확대: (’23)11개국 → (’24)13개국
– 미·영 중심의 국외훈련 탈피, 비영어권 국가를 9개→11개국으로 확대
※ 신규: 이탈리아(UN세계식량농업기구), 프랑스(파리시청, 국립동양언어문화대)
<table><tr><th>23년(11개국)</th><th></th><th>24년(13개국)</th></tr><tr><td>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페루</td><td>➡</td><td>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페루, 이탈리아, 프랑스</td></tr></table></td></tr>
<tr><td>② 직무훈련 강화</td><td>○ 직무훈련 기관 확대: (’23)5개 → (’24)8개
<table><tr><th>23년(5개)</th><th></th><th>24년(8개)</th></tr><tr><td>· 샌프란시스코 시청(미)
· 이클레이(독)
· UCLG 세계본부(스페인)
· 요코하마 시청(일)
· 리마 시청(페루)</td><td>➡</td><td>· 샌프란시스코 시청(미)
· 이클레이(독)
· UCLG 세계본부(스페인)
· 요코하마 시청(일)
· 리마 시청(페루)
· UN세계식량농업기구 (이탈리아)
· 까사아시아 (스페인)
· 파리시청 (프랑스)</td></tr></table>▸ 지정기관직무 신설
– UN세계식량농업기구(FAO) 본부(이탈리아, 로마) : “녹색도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등을 통한 UN과 서울시간 협력방안 및 공동 프로젝트 모색
– 까사아시아(Casa Asia, 스페인, 바르셀로나) : 아태지역 교류 강화
▸ 특별정책(국립동양언어문화대)+지정기관직무(파리시청) 과정 신설
– (국립동양언어문화대, 9개월) 불어, 사회문화강좌, 현지답사 등의 프로그램 참가
– (파리시청, 2개월) 선발자 이력 등을 고려한 유관부서에서 직무훈련 실시</td></tr>
<tr><td>③ 훈련관리 강화</td><td>○ (선발강화) 지정기관직무 영어면접 강화
– 심층면접시 지정기관직무 지원자는 원어민 영어면접 강화
※ FAO의 경우, 화상 영어면접에 통과한 자에 한해 국외훈련심의회에서 최종선발
○ (관리강화) 훈련성과보고서 표절시 환수규정 강화
– (기존) 월 체재비의 2배 → (강화) 월 체재비의 4배 환수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행안부 예규 제240호, ‘23. 2.15.)
– 표절 예방을 위해 '훈련성과보고서' 등의 표절검사(허용율15% 미만) 수시 실시</td></tr>
</table>

□ 주요 변경내용

① (기관확대) 신규 훈련기관 발굴로 국제교류 확대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지정기관직무) UN세계식량농업기구(이탈리아), 까사아시아(스페인)
- (특별정책과정+지정기관직무) 국립동양언어문화대(9개월) + 파리시청(2개월)

⇒ 특별정책과정과 직무훈련을 연계하여 훈련효과 극대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

ㅇ **'24년 지정기관직무(2년) 훈련기관 : 3개 기관, 3명**
- 기존 훈련기관(1개, 1명) : 리마시청(페루)
- 신규 훈련기관(2개, 2명) : UN세계식량농업기구 본부(이탈리아), 까사아시아(스페인)

ㅇ **'24년 특별정책과정(1년) 훈련기관 : 5개 기관, 13명**
- 기존 훈련기관(4개, 11명) : 포틀랜드주립대 4명(미국), 버밍엄대 3명(영국), 싱가포르국립대 2명(싱가포르), 대외경제무역대 2명(중국)
- 신규 훈련기관(1개, 2명) : 국립동양언어문화대(INALCO)+파리시청 2명(프랑스)

② (선발강화) 지정기관직무 영어면접 강화

- 지정기관직무 지원자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시 원어민 영어면접 강화
- (UN세계식량농업기구, FAO) UN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자와 화상영어면접 사전 실시 후 통과자에 한해 국외훈련심의회에서 최종 선발심의

③ (과정관리) 훈련성과보고서 표절시 환수규정 강화

- (기존) 월 체재비 2배 → (강화) **월 체재비 4배 환수**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 '23. 2.15.)

- 훈련성과보고서 표절검사 및 대시민 공개 철저

ㅇ 표절 기준 : 표절률 15% 이상인 경우

ㅇ 검사 방법 :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통한 검사 *카피킬러 : 60억 건 이상의 문서와 비교검사

ㅇ 표절률 15% 이상 훈련성과 보고서 보완 조치 : 보완통보 후 1개월 이내

Ⅳ 세부 추진계획

1 운 영 개 요

1-1. 선발인원

□ **인원 : 총 37명** ※ 3급 이상 4명 별도 선발 포함

- ㅇ 학위과정 : 10명(5급 5명, 6급 이하 5명)
- ㅇ 직무과정 : 27명(3급 이상 4, 4급 7명, 5급 이하 16명)
  - 일반직무(4급 이상) : 11명(3급 4, 4급 7) **※ 4급은 학위과정 신청자 우선 선발**
  - 지정기관직무(5급 이하) : 3명
  - 특별정책과정(5급 이하) : 13명

(단위 : 명)

구 분	계	3급이상	4급	5급	6급이하	비 고
'24년 계획	37	4	7	11	15	
학 위	10			5	5	
직 무	27	4	7	6	10	※ 3급 이상(4명) 별도 선발
일반직무	11	4	7	–		- 3급 이상 : 직무과정만 선발 - 4급 : 직무·학위과정 모두 선발 ※ 단, 학위과정 선발자 우선 선발
특별정책	13	–	–	5	8	- 5급 이하 ▸ 포틀랜드대(4), 버밍엄대(3), 싱가포르국립대(2), 대외경제무역대(2), 국립동양언어문화대(2)
지정기관직무	3	–	–	1	2	- 5급 이하 ▸ UN세계식량농업기구(이탈리아), 리마시청(페루), 까사아시아(스페인)

- 직급·과정별 선발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미달 시 직급·과정별 인원 조정
- 지정기관 직무과정 및 특별정책과정 공통사항
  - ► 5급 이하는 직급에 관계없이 선발하므로, 위 표의 직급별 선발인원은 달라질 수 있음
  - ► 훈련기관 요건 충족, 인터뷰 결과에 따라 선발자 최종 파견
  - ► 특별정책과정과 지정기관직무 간 중복지원(1-3지망) 허용 ※ 학위과정은 제외

1-2. **지원자격**

□ 일반자격

ㅇ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및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0조, 「국외훈련 업무처리지침」 등 요건

- **7급 이상 경력직공무원**으로 **'23.12.31. 기준 만 50세 이하('73.1.1. 이후 출생자), 실제 근무경력 3년 이상** 및 **市 전입 2년 이상 연속 근무**

  ※ 선발과 파견이 동일년도에 이루어지는 경우 전년도 말('72.1.1.이후 출생자) 기준

  ※ 국장급은 만 53세 이하로 함('70.1.1. 이후 출생자)

-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 기간 근무(의무복무)가 가능한 사람
-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선발 연도 말 현재 국외훈련파견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
- 6월 미만의 개인단기직무훈련을 이수한 경우 국외훈련 신청 마감일 현재 국외훈련 파견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단체훈련 제외)
-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연구직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기타 선발 제한 사항

  • 공무원 3대 비리(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징계처분 이력자(징계처분 기록말소자 포함)

  • 징계 절차 진행 중인 자

  • 선발 연도 말 현재 6개월 이상 국내 교육훈련기관 장기교육훈련 중인 자*

  * 행안부 지방자치인개발원, 통일교육원 등 장기교육과정, 서울시 인재개발원 미래인재 양성과정(국내·국제반) 등

  •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훈련 중인 자(의무복무 중인 자 포함)는 장기국외훈련 학위과정 선발 제한

  • 학위과정의 경우, 국내·외 박사학위 또는 국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어학요건

어 권	어 학 성 적	공통
영 어 권	토플 IBT 75점, 서울대·한국외대·부산외대·LATT 어학검정 60점, IELTS 5.5점, 토익 700점, TEPS 600점(NEW TEPS 327점), TOSEL 640점, G-TELP(Level 2) 70점 이상	OPIc IM1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한국외대·부산외대 어학검정 60점, 중국어 신HSK 5급(300점 만점) 180점 이상, 일본어 JLPT N2(180점 만점) 100점 이상	

※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특별정책과정(1년)' 은 토익 등 영어점수와 오픽 영어점수 합산으로 선발

- 어학성적 사본 : 어학성적은 신청서 접수 시 충족, 접수기간 이후 제출(보완) 불인정
  - ► 토익 등 유효기간 : 선발 연도말 ('23.12.31.) 기준 **2년 이내**
  - ► OPIc 유효기간 : 선발 연도말 ('23.12.31.) 기준 **1년 이내**
- 3급 이상 국장급 공무원의 경우 훈련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훈련 일반요건에서 정한 어학점수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면제 가능
-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과정을 할 경우, 영어성적 제출

☐ 어권별 훈련국

ㅇ 영 어 권 : 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ㅇ 비 영 어 권 :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기타 EU국가, 러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 **특수 훈련지역** : 러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 특수지역 훈련비 지원 : 체재비 외 매월 훈련보조비 360달러 추가 지급

(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 선발 후 훈련계획 변경 불가사항 >

◆ **선발된 언어권에서 타 언어권으로 변경 불가**

- 비영어권에서 영어권으로, 영어권에서 비영어권으로 변경 불가

◆ **선발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변경 불가**

◆ **미국 이외의 영어권 국가에서 미국으로 변경 불가하나,**

- 미국에서 영국 및 기타 국가로 변경은 가능
- 영국에서 미국 이외의 기타 국가로 변경은 가능

◆ **훈련 유형 변경 불가**

- 직무훈련에서 학위과정으로, 학위과정에서 직무훈련으로 변경 불가

1-3. 선발기준

○ 선발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쟁선발

- 시정기여도, 심층면접, 훈련계획, 어학성적, 다면평가 등을 고려 종합평가

○ 창의행정, 시정핵심, 기피·격무업무 추진 등 가산점 부여 가능 : 20점 이내

- 단, 국외훈련심의회에서 평가('세부기준' 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기준 및 배점 : 총 110점

시 정 기 여 도(30)		심 층 면 접	훈 련 계 획	어 학 점 수	다 면 평 가	핵심·격무 업무추진 등	창의행정 우수 공무원
근무경력 (10)	업무추진실적 (20)						
10	20	15	15	30 ❖ 토익 등 : 15 ❖ OPIc : 15	-	10	10

※ 다면평가 배점은 없으나, 훈련대상자 적격여부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1-4. 파견기간

□ 파견기간 : 2년 이내(영어권, 비영어권 동일)

○ 학위과정(4급 이하) : 2년 이내

○ 직무과정

- 일반직무과정(4급 이상) : 2년 이내
  - ► 3급 이상 : 1년(1년 연장 가능)
  - ► 4급 : 2년
- 특별정책과정(5급 이하) : 1년
- 지정기관직무(5급 이하) : 2년 이내
  - ► 파견기간 종료 후 '추가연구 등을 위한 파견기간 연장 불가'
  - ► 최대 훈련기간 : 국외훈련 파견기간의 합이 4년 이내(횟수 최대 2회)

○ 파견을 위한 비자발급은 선발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며, 국가별 비자 발급 절차가 상이하므로 지원 전 확인 필요

1-5. 훈련과정

1 학위과정

○ 대　　상 : 5급 ~ 7급

- 국외훈련 미경험자 우선 선발
- 비영어권 국가 학위 신청자 우대　※ 일본, 중국, 싱가포르는 비영어권 국가에서 제외
  - ► 비영어권 국가 내 제2외국어(독일어, 불어 등 현지어) 학위과정 : 우선 선발
  - ► 비영어권 국가 내 영어로 운영되는 학위과정 : 훈련국 다변화 가점 부여
- 가점부여 관련 세부사항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기　　간 : 2년 이내　※ 준비·정리기간, 어학기간 등 포함

- 파견 시작일은 학위과정 오리엔테이션 일자를, 파견 종료일은 졸업일 기준
- 준비 및 정리기간 30일(각 15일) 포함하여 파견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준비 및 정리기간은 국외에서의 기간을 말함
  - 출국일=파견시작일이 원칙

○ 훈련방법 : 석사학위 취득을 통한 훈련과제 완수

- '24년 훈련과제 목록(총 100건) 중 훈련과제를 선택하여 관련 분야 대학원 진학

○ 훈련기관

- 영어권의 경우, 대학원 과정의 분야별 상위 70위권 이내
  ※ U.S. News & World Report 등(미국), Guardian(영국) 순위 기준
  ※ 기타 국가 :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근거로 훈련자가 직접 소명 및 인력개발과 승인 필요
- 조건부 입학(pre-master 사전 이수조건 등) 불인정

○ 훈련기관 인원

- 동일 훈련기관 파견 인원 제한 : 3인 이내(직무·학위·특별정책과정 포함)
  ※ 훈련기관 섭외시 인력개발과와 사전 협의 필요
  ► 동일 훈련기관의 파견요청이 기존 훈련생을 포함해 3명 이상일 경우, 공문으로 훈련기관의 초청장, 입학허가서 등을 먼저 제출한 자에 파견승인
- '24년도 학위 및 직무 파견 배제 기관 :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영국 버밍엄대 (특별정책과정 운영)

ㅇ **훈 련 비 : USD 18,000 이내 / 1년(학자금)**

-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 등록금 및 기타 의무적으로 지급이 필요한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ㅇ **포기자 대비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한 예비자 선발**

- **직급별**(5급, 6급 이하) **예비자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파견인원의 1.5배 범위 내 예비자 선발
  ※ 선발자 중 포기자 발생 시 직급별 예비자가 우선하되, 교차 가능
- 본 선발자를 우선 파견하되, '24.5.31.까지 입학허가(admission) 미취득 시, 예비 선발자에게도 동일한 기회 부여 → **입학허가를 먼저 취득한 자에게 파견 기회 부여**

2 직무과정

① 일반 직무과정

ㅇ **대 상 : 4급 이상** ※ 3급은 추후 별도 선발

- 4급의 경우 **학위과정 신청자, 비영어권 국가 지원자, 국외훈련 미경험자** 선발 우대

ㅇ **기 간 : 2년 이내**

- 기준일 : 초청장에 명시된 소요 기간 기준 ※ 별도 준비기간 포함 2년 이내
- 국장급은 1년 원칙, 1년 이내 연장 가능
- 복귀 시기 : 정기 인사일정 고려 2년 기간 내에서 6.30. 또는 12.31.까지
  ► 준비 및 정리기간은 국외에서의 기간을 말함
  ► 출국일=파견시작일이 원칙

ㅇ **훈련방법 : 현장 직무훈련(인턴십 등) 또는 연구소 프로그램 참여 등**

ㅇ **훈련기관 : 연구과제와 관련된 해외정부·비영리단체·민간기업 또는 저명한 독립연구소나 대학부설연구소**

- 개인이 기관과 교섭, 비자 및 어드미션 취득
  ※ 재외한국인이 운영하는 기관 또는 외국대학(원)의 한국학연구소 파견 불가

ㅇ **훈 련 비 : USD 9,000 이내 / 1년(기관부담금+세미나 비용+어학비 등 포함)**

-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MOU 상 명시된 금액 지원 가능

ㅇ **훈련기관 인원**

- **동일 훈련기관 파견 인원 제한 : 3인 이내**(직무·학위 포함)

② 특별정책과정

○ 대　　상 : 5급 ~ 7급

- 국외훈련 미경험자 우선 선발

○ 기　　간 : 1년　　※ '기간 연장'이나 '학위과정'으로의 변경 불가

► 준비 및 정리기간은 국외에서의 기간을 말함

► 출국일=파견시작일이 원칙

○ 파견시기 : '24. 7월 중

○ 훈련방법 : 어학, 전문과목, 필드트립, 실무수습 등 과정이수

○ 훈련기관 : 5개 대학(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중국)

연번	국 가	훈련기관	기간 (인원)	훈련자격 및 조건 등
1	미　국	**포틀랜드주립대** 공공행정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1년 (4명)	‣ 프로그램 : 사전 어학강의, 세미나 참석, 현장실습 등 ‣ 사공공행정대학원 2명, 사회복지대학원 2명 ‣ '24.7월 중 파견 예정
2	영　국	**버밍엄대** 사회과학대학원	1년 (3명)	‣ 등록기간까지 **IELTS 6.0 이상(분야별 5.5 이상) 취득 요망 (입학요건)** ‣ 프로그램 : 사전 어학과정, 학기당 2과목 강의, 현장실습, 세미나 참석, 보고서 제출 등 ‣ '24.7월 중 파견 예정
3	싱가포르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스쿨	1년 (2명)	‣ 등록기간까지('24년 2월 말) **토익 750점 이상, 토익 라이팅 및 토익스피킹 140 이상 취득 요망 (입학요건)** ‣ 프로그램 : 영어강의, 학기당 1과목 및 자율청강 1과목 세미나 참석, 현장실습, 유관기관 방문 등 ‣ '24.7월 중 파견 예정
4	중　국	**대외경제무역대** 국제학원	1년 (2명)	‣ **토익 등 영어점수와 오픽 영어점수 합산으로 선발** ‣ 프로그램 : 주2회 강의(영어), 어학과정(중국어, 주5회) 세미나 참석, 현장실습 등 ‣ '24.1월 또는 7월 중 파견 예정
5	프랑스	**국립동양언어문화대 (INALCO)** 신규	1년 (2명)	‣ 프로그램 : 어학과정, 강의, 세미나 참석, 현장실습 등 ‣ 국립동양문화언어대(INALCO*) 프로그램(9개월) 수료 후 파리시청 직무훈련 (2개월) ‣ '24.7월 중 파견 예정 *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 훈 련 비 : USD 20,000 이내 / 1년

-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MOU 체결상의 금액 지원 가능

③ 지정기관 직무과정

○ 대　　상 : 5급 ~ 7급　※ 영어 등 의사 소통 가능자(OPIc IM3 이상)

- 국외훈련 유경험자 지원 가능

○ 기　　간 : 2년 이내　※ 준비·정리기간, 어학기간 등 포함

► 준비 및 정리기간은 국외에서의 기간을 말함

► 출국일=파견시작일이 원칙

○ 훈련방법 : 지정기관에서 인턴십 근무 등 현장 직무훈련 실시

○ 훈련기관 : 市에서 지정·추천하는 국제기구·협회 본부·지역사무소, 외국정부, 비영리재단 등에서 실제 근무

- UN세계식량농업기구 본부(이탈리아), 까사아시아(스페인), 리마시청(페루)

○ 훈 련 비 : USD 9,000 이내 / 1년(기관부담금+세미나 비용+어학비 등)

-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MOU상 명시된 금액 지원 가능

○ 선발 및 파견조건

- 훈련기관이 요청한 자격조건 등에 따라 경쟁을 통해 선발하며 훈련을 위한 체류허가 및 비자취득 등은 개인이 교섭하여 발급절차 진행
- 市 선발 이후 훈련기관의 화상 면접 등 별도의 절차에 따라 최종 선정, 기관 수락 전까지는 선발 미확정임
- 영상면접 전 또는 영상면접 합격 후 훈련기관 사정으로 훈련자 파견 수용 의사 철회 시 동일 국가 내 일반직무 훈련으로 변경하여 선발 자격 유지
- 화상 면접 탈락 시 선발 취소 및 국외훈련 1회 수혜자 간주
- 훈련기관과의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근무지 및 파견 시기 변동될 수 있음

〈 지정기관 직무과정 기관별 선발요건 〉

◇ 서울시 선발 추천 후 파견기관 영상면접 후 최종 선정(단, FAO는 사전면접)

연번	국가 (도시)	파견기관 · 기간	직급	지원자격, 역할 및 근무조건
1	이탈리아 (로마)	**UN세계식량농업기구 본부 (FAO*)** (2년) *Food &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신규	5급	▸자격 : **영어 의사 소통 가능자**(말하기, 영문서류 작성능력), OPIc 영어 IH 이상 ▸분야 : 기후환경, 녹색도시, 스마트시트 등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기후변화, 환경연구, 농업 및 식량, 관련분야 경제, 토지 및 수자원 관리, 도시계획, 지리공간 데이터 등 ▸업무 : 녹색도시 관련 프로젝트 업무 지원 등 ▸파견 : '24. 7월 이후~(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파견기관 영상면접 실시 후 국외훈련심의회에서 최종선발
2	스페인 (바르셀로나)	**까사아시아 (Casa Aisa)** (2년) 신규	5급 이하	▸자격 : **영어 의사 소통 가능자**(말하기, 영문서류 작성능력), OPIc 영어 IM 3 이상, 스페인어회화가능자 우대 ▸분야 : 국제교류, 문화, 교육, 관광 등 ▸업무 : 국제교류 및 문화교류 프로젝트 관련 업무지원 등 ▸파견 : '24. 7월 이후~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페루 (리마)	**리마시청** (2년)	5급 이하	▸자격 : **영어 의사 소통 가능자**(말하기, 영문서류 작성능력), OPIc 영어 IM 3 이상, 스페인어회화가능자 및 스마트시티, 관광보건 경험자 우대 ▸분야 : 스마트시티, 보건 등 ▸업무 : 리마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 지원 등 ▸파견 : '24. 7월 이후~(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제2외국어 선발 우대 희망자는 증빙자료(어학성적 등) 제출 요망

※ 현지 기관의 사정 등으로 선발완료 이후 파견이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외훈련 1회 수혜자로 간주하지 않음

2 선발 및 파견개요

2-1. 선 발

1 훈련대상자 모집

○ 모집기간 : '23. 8. 17.(수) ~ 8. 18.(금)(3일간)

○ 대 상 : 국외훈련 희망자 중 선발 요건 충족자

《 중복지원 허용 》

◆ **훈련기관별 경쟁률 편차 및 지속적인 추가선발 문제 해소**를 위해 '21년부터 실시
- 중복지원 가능 : 지정기관직무와 특별정책과정 간 (최대 3지망까지)
※ 단, 학위과정은 제외

○ 방 법 : 실·본부·국장 추천 ⇒ 인력개발과 제출(공문)

※ 신청서 등 서명된 원본 및 관련 서류는 접수기간 중 인력개발과 직접 제출

○ 제출서류 : 신청 확인서 및 신청서, 훈련계획서, 업무추진실적 및 증빙자료, 인사기록요약서,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연번	제출서류	세부내역	비고
1	훈련계획서	• 학위과정 : '24년 훈련과제 목록(총 100건) 중 개인별 2개 선택하여 훈련계획서 제출(1~2과제) • 지정직무기관 및 특별정책과정 : 1~3과제(복수 지망 시) ※ 복수지망 훈련국가 및 훈련기관에 맞게 작성	한글파일 (신청서 포함)
2	업무추진실적	• 최근 5년간 실적 기준(1매 작성) ※ 5급 이하의 경우 업무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증빙자료 별도 제출	한글파일
3	인사기록요약서	• e-인사마당에서 출력	PDF
4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 선발 연도 말('23.12.31.) 기준 - 토익 등 2년 內('22.1.1.) 이후/ OPIc 1년 內 ('23.1.1.) 이후 취득에 한함 ※ 접수기간 이후 제출된 어학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PDF

2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비고
모 집			
신청서 접수	8.16.~8.18.	‣실·본부·국 ⇒ 인력개발과	공문
선 발			
근무경력 평가	8.21.~9.1.	‣현 직급 경력, 총 재직경력, 市 근무경력 평가	
업무추진실적 평가	8.21.~9.1.	‣업무추진실적평가위원회(공개모집) ‣신청 대상자 업무추진실적 공개(행정포털)	
훈련계획서 평가	8.24.~9.1.	‣분야별 전문가 지정, 서면 평가	
다면평가	8.24.~9.1.	‣피평가자와 근무경험 있는 자로 구성	
심층면접	9.4.~9.5.	‣외부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원어민 교수 등 포함 평가단 별도 구성	
국외훈련심의회 심의·의결	9월 중순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선발결과 공개	9월 하순		
파견기관별 영상면접	10월	‣직무훈련 파견 기관별 별도 진행 ※ 단, FAO는 심층면접 후 바로 실시	
교 육 (파견예정자)			
선발 이후 파견 절차 안내	10월	‣선발자 설명회 개최	
국외훈련 선발자 교육	'24 상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참여 (5급 이하)	
파 견			
훈련계획서 제출 등 파견요청	파견 1개월 전	‣지원자 소속부서 ⇒ 인력개발과	공문
국외훈련심의회 심의·의결	파견 3주 전	‣파견기간, 훈련기관, 훈련계획 등	
파견의뢰	파견예정일 2주 전	‣인력개발과 ⇒ 인사과	
파견명령	출국일 기준	‣인사과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훈련자 평가 및 선발

☐ 근무경력 평가(10점) ※ 대상 : 4급 이하

ㅇ 시 기 : '23. 8. 21.(월) ~ 9. 1.(금)

ㅇ 평 가 자 : 인력개발과 담당자 및 팀장

ㅇ 평가방법 : 인사시스템 근무경력 확인

- 현 직급 경력 점수(4점)
- 총 재직경력(2점) 및 시 근무경력(4점) 점수 경력에 따라 차등 부여

✓ 제외기간(재직경력) : 휴직(육아, 유학 등), 6개월 이상 국내외 장기교육 및 장기병가, 교류(민간기업 임시채용 등), 군 입대기간

✓ 제외기간(시 근무경력) : 휴직(육아, 유학 등), 6개월 이상 국내외 장기교육 및 장기병가, 교류(민간기업 임시채용 등), 군 입대기간, 국가기관 및 자치구 파견기간

☐ 업무추진실적 평가(20점) ※ 대상 : 5급 이하

ㅇ 시 기 : '23. 8. 21.(월) ~ 9. 1.(금) 기간 중 1일

ㅇ 평가방법 :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 별도 모집(공개모집 예정)

- 실제 근무경력 5년 이상인 공무원 중 직급별·직렬별로 적정 배분
- 5급 이하 7명 내외로 구성하여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화
- 업무추진실적 증빙자료를 통한 업무추진실적 확인

※ 4급은 BSC 평가로 업무추진실적 평가 대체

☐ 훈련계획서 평가(15점) ※ 대상 : 4급 이하

ㅇ 시 기 : '23. 8. 24.(목)~9. 1.(금)

ㅇ 평가자 및 평가방법 : 분야별 전문가 / 서면평가

- 훈련신청자 1명당 2명의 평가위원이 제출한 점수를 합산·산술평균

☐ 어학성적 평가(30점) ※ 대상 : 4급 이하

○ 평가방법

- 유효기간 내 어학성적 제출 및 환산점수 반영
- 총 30점 : 토익·텝스 등 15점 + 오픽(OPIc) 15점

○ OPIc 시험 평가점수

구분(영어)	환 산 점 수	비고
Advanced(고급) Low(AL)	15점	
Intermediate(중급) High(IH)	14점	
Intermediate(중급) Mid3(IM3)	13점	지정기관직무 선발 최저 요건
Intermediate(중급) Mid2(IM2)	12점	
Intermediate(중급) Mid1(IM1)	11점(신청 하한요건)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선발 요건('20~, IM1 이상) 반영
Intermediate(중급) Low(IL)	신청 제한	
Novice(초급) High(NH)		
Novice(초급) Mid(NM)		
Novice(초급) Low(NL)		

※ 인력개발과 주관 OPIc 시험 폐지(22년 사전예고)

☐ 전문가 심층면접(15점) ※대상 : 4급 이하

○ 시기 및 장소 : '23. 9. 4.(월) ~ 9. 5.(화), 장소 미정

○ 평가자 : 외부전문가(교수, 연구원, 원어민 등) 포함 면접관 3인

○ 평가방법 : 1인당 30분 내외 개별면접

- 조직발전 기여도 및 개인역량에 대한 종합적 평가
- 훈련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 편성(1개 조당 4~6명) 및 평가

▢ 다면평가 (평가점수 미반영)

○ 시　　기 : '23. 8. 24.(목) ~ 9. 1.(금)

○ 평 가 자 : 피평가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

- 피평가자와 동일부서 근무경험자로 무작위 선별(현 소속부서 포함)
- 훈련대상자 1인당 20명의 평가단 추출(상급자 6, 동급자 8, 하급자 6)

○ 평가방법 : On-Line 평가(행정포털 e-인사마당)

▢ 업무추진실적 검증

○ 시　　기 : '23. 8. 21.(월) ~ 9. 1.(금)

○ 검증방법 : 행정포털 공개 및 의견 접수, 업무추진실적 증빙자료 대사

▢ 훈련자 선발

○ 시기 및 선발 결정 : '23. 9월 하순,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내용

- 심의위원회 개최 시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기준 확정
- 기본 평가점수를 기초로 하되, 시정 핵심·격무업무 추진, 다면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발

《 23-24년 격무·기피부서 현황 》

◆ 녹색에너지과, 버스정책과, 자원순환과, 보건의료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교통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예산담당관, 경제정책과, 공동주택지원과

○ '24년 선발인원 : 총 33명(본 선발 33, 예비 7명 이내*) ※ 3급 이상(4명) 별도 선발

*학위 4명 이내, 일반직무 1, 특별정책 1, 지정기관 1

(단위 : 명)

과정명		선발인원	예비자	
계		33	7명 이내	
학위	5급	5	2명 이내	선발자 중 포기자 발생 시 직급별 예비자가 우선하되, 교차가능
	6급 이하	5	2명 이내	
직무	일반직무(4급 이상)	7	1	
	특별정책(5급 이하)	13	1	
	지정기관직무(5급 이하)	3	1	

2-2. 파 견

○ 시 기 : ’24. 1. 1. ~ ’24. 12. 31.

- 기관 및 개인별 국외훈련 일정 고려하되, **최대한 인사발령 시기에 맞춰** 파견

○ **파견결정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파견요청**은 훈련계획서 등 제서류를 갖추어 **파견 1개월 前까지 공문으로 요청**

○ **심의내용 : 훈련계획의 적정성 및 훈련 효과성 검토, 파견 결정**

- 실질적인 직무훈련 가능성 및 사무공간 확보 여부, 실제 근무 내용 등
- 훈련 기간 내 과제 수행 여부, 수행 방법 등 적정성
- 적정한 현지 체류 허가 및 VISA 취득 계획 확인
- 동일 기관(직무·학위·특별정책과정 포함 3인 이내) 파견 인원 등

2-3. 훈련자 관리

☐ 복무관리 - 훈련상황 보고, 품위유지·성실의무 등 지침 준수

○ **훈 련 중 : 수시 및 정기 훈련상황 점검**

- 학습관리시스템 내 학습성과 공유방을 통한 과제 제출 이행여부 점검

► 주요 보고서 제출시기와 분기별 체재비 지급시기 연계 강화

▸훈련상황보고서(분기별) : 3·6·9·12월 10일까지 ※ 학위는 학기별
▸연구과제보고서(연 1회) : (1차) 파견시점에 따라 6.30 또는 12.31까지
(2차) 파견 복귀 3개월 前까지

○ **훈 련 후 : 의무복무 이행, 타기관 전출 제한 등**

- 훈련 종료 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귀국**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귀국이 지연될**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에 대해 **사전 승인(지연귀국 금지)**
  ※ 파견기간 전 미리 출국의 경우도 사전 승인 필요(**출국일=파견 시작일**, 조기출국 금지)
- 의무복무 이행 : 장기국외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 유관부서 근무 : 훈련 종료 후 훈련분야 유관부서 배치, 훈련기간의 최대 2배 기간 동안 훈련분야 유관부서 근무
- 타 기관 전출 제한 : 국외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 기간 중 전출 제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4조(의무복무)

▢ 보고 · 정보제공

ㅇ 정기보고서 작성 내용·형식 다양화로 시정활용도 제고

- 해외정부 우수정책, 세미나 참여, 과목 수강 내용 등을 포함

ㅇ 훈련성과 제고를 위한 주기적 시정 자료 제공

- 시정 우수사례 특강 자료 및 시정 보도사항 학습공유방 게재 등

▢ 훈련비 신청 및 관리

ㅇ 훈련비 신청 : 학자금, 세미나 비용 등

- 학습성과 공유방(http://abroad.seoul.go.kr)을 통해 신청

ㅇ 훈련비 지급내역 관리 : 학습성과공유방에 입력 및 DB화

학습성과공유방 로그인	⇒	마이 페이지	⇒	훈련비 신청 내역 입력, 승인요청	⇒	훈련비 내역 검토 및 승인	⇒	훈련비 지급	⇒	훈련비 내역 데이터 관리
훈련자		훈련자		훈련자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ㅇ 훈련 중 '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훈련비(체재비) 지급 제한

미제출자 개별안내	⇒	훈련비 지급 유예	⇒	보고서 제출	⇒	훈련비 지급
제출기한 및 훈련비 유예 안내		1차 독촉 후 미제출시, 지급 유예		다음 분기 훈련비 지급 전		보고서 제출 후 지급 ※미제출시 미지급

▢ 훈련비 해외송금 수수료 지원

ㅇ 훈련자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해외송금수수료(건당 약 $20) 사후정산 • 지급

ㅇ 지급방법 : 국외훈련자 복귀 후 정산 시 일괄 지급

- 훈련자가 수수료 발생내역 증빙서류(수취 영수증, 통장내역 등) 제출
- 인력개발과는 송금내역과 증빙서류 대조 후 수수료금액 산정지급

2-4. 훈련자 평가

□ 과정 평가

○ 대　　상 : 훈련자 전원

○ 내　　용 : 훈련상황보고서 점검(수시) 및 훈련실태 점검(반기)

- 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 이행 여부 점검(수시) 및 체재비 지급 연계
- '연구과제 보고서' 표절검사 및 대시민 공개

※ 훈련 중 제출 보고서, 제출시기 및 분량

보고서명	제출시기	분량
①훈련기관 및 현지생활 소개서	파견 후 3월 이내 (훈련 중 1회)	5쪽 이상 (13 point, 줄 간격 160%)
②훈련진행 상황보고서	* 학위과정 : 매학기 종료 후 *직무과정 : 분기별 1회	
③연구과제 보고서 (표절 검사 실시 및 대시민 공개) ※표절 허용률 : 15% 미만	연 1회	30쪽 이상 (13 point, 줄 간격 160%)
④시정반영 우수정책 사례	* 학위과정(2년) : 8회 *일반직무과정(2년) : 20회 *지정기관직무 : 분기별 1회	3쪽 이상 (13 point, 줄 간격 160%)
⑤훈련성과 보고서 **(표절검사 실시 및 대시민 공개)** ※표절 허용률 : 15% 미만	훈련 복귀 전	50쪽 이상 (13 point, 줄 간격 160%)

- 상 · 하반기 훈련기관 지도교수, 감독관 등에게 공식서한을 통해 수업결석, 무단결근 등 훈련실태 점검 실시

○ 결과조치 : 평가결과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 보고

- 훈련성과 미흡 자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사 의결 후 중도복귀 등 조치

《 훈련실태 점검 결과 조치사항 》

- (최초 적발) 수업 결석, 무단 결근 등으로 인한 훈련 불성실이 공식 확인될 경우 경고 조치
- (2회 적발) 관련 기관 최종 의견 수렴 후 훈련부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분기 훈련비 미지급
- (3회 적발) 국외훈련심의회 심의 · 의결 후 중도복귀 조치

▢ 성과 평가

ㅇ 대　　상 : **국외훈련 이수자 전원**(훈련종료 후 평가)

ㅇ 시　　기 : **반기별**(총 2회)

ㅇ 내　　용 : **훈련성과 보고서 및 학위취득 여부 등**

ㅇ **평가방법 : 분야별 전문가 평가**(1건당 2인 외부 평가위원) **및 국외훈련심의위원회 보고**

ㅇ **평가기준 및 방식**

- 기 준 : 제출시기, 활용 가능성, 충실도, 타 논문과의 유사도 등
- 방 식 : 개인별 점수에 따라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ㅇ **결과조치 : 평가결과 미흡 시 보고서 보완 등 조치**

- 보고서 부실 및 당초 훈련과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작성 요구
- 1·2차 보완 후 재평가 결과 '미흡' 시 패널티 부과

《 훈련성과 보고서 등 관련 훈련비 환수 기준 》

◆ **훈련성과 보고서 미제출**

►훈련복귀 전 훈련성과 보고서 미제출 : 기 지급된 **월 체재비의 1배 환수**

►파견 종료 후 6개월 경과 : 기 지급된 **총 훈련비의 10% 환수**

►파견 종료 후 1년 : 기 지급된 **총 훈련비의 10% 추가 환수**

◆ 훈련성과 보고서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논문 등을 표절**

►기 지급된 월 체재비의 4배 환수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행안부 예규 제240호, 2023. 2. 15.)

◆ **학위훈련비 10% 환수 : 훈련성과 보고서 작성 미흡(평가점수 60점 미만)**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시 1·2차 보완·경고 후 패널티 부과

◆ **직무훈련비 50% 환수 : 훈련성과 보고서 작성 미흡(평가점수 60점 미만)**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시 1·2차 보완·경고 후 패널티 부과

◆ **학위훈련비 50%내 차등 환수 : 학위 미취득**

►이수과목 부족(F학점 포함) : 50%

►학점미달 : 40%

►논문 미제출 : 훈련 복귀 후 2학기 이내에 미취득시 30%

※훈련비는 국제화여비(체재비 등) 및 사무관리비(학자금)를 포함

2-5. 성과평과 및 활용

▢ 훈련성과보고회 개최

- ㅇ 일　　시 : ’23. 12월(예정)
- ㅇ 대　　상 : ’22. 6월 ~ ’23. 6월 복귀자 전원 및 관심있는 직원 등
- ㅇ 내　　용 : 영상물 상영, 훈련성과 발표, 성과물 전시·공유 등

▢ 훈련자 강사 활용

- ㅇ 대　　상 : 훈련자 전원
- ㅇ 방　　법 : 인재개발원 또는 관련 부서 OJT
  - 5급 이상 :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과정에서 강사 활용
  - 6급 이하 : 훈련과제 관련 부서의 실무직원 대상 OJT로 운영

▢ 학습성과공유 시스템 운영

- ㅇ 국외훈련자 보고서 학습 관리시스템 등록·활용

※ 학습성과공유방 접속방법 : [행정포털] - [학습관리시스템] - [학습성과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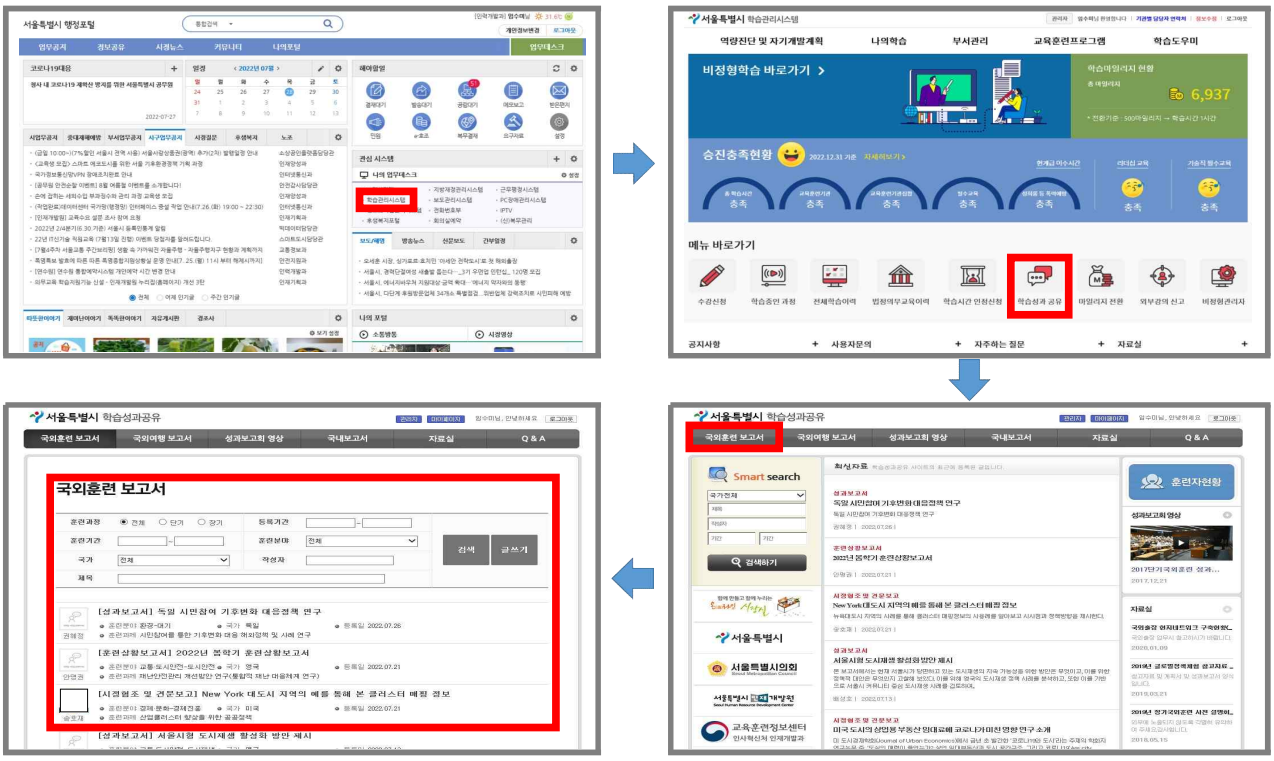

- ㅇ 훈련성과 보고서 외부 공개
  - 서울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Ⅴ 행정사항

□ '23 예산 : 4,097백만원

○ **훈 련 비**

- 한도액 초과분은 자비 부담

○ **체 재 비 : 국외훈련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지급**

○ **항 공 료 : 공무원여비규정 등에 의해 지급**

- 본인, 배우자 및 자녀(만 26세 미만 미혼자녀)의 왕복 항공료
  ※ 동반가족의 경우, 파견기간의 1/2 이상 동거하는 경우에 한함

- 항공운임 : 본인(1~3급 국장급 포함) 및 동반가족은 모두 이코노미 적용

○ **기타 운영비, 훈련계획서·훈련과제 등 평가 및 심층면접 수당 등**

□ 부서 협조

○ **실·본부·국 : 국외훈련 대상자 추천**

○ **인 사 과**

- 국외훈련 신청자 대상 다면평가 실시

- 국외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 기간 중 전출 제한 등 시행

○ **감사위원회**

- 국외훈련 신청자 비위 조회

○ **평가담당관**

- 4급 이상 국외훈련 신청자 BSC 점수 통보 협조

○ **인재개발원 : 훈련이수자 중 5급 이상자 훈련분야 관련 집합교육 강사 활용**

붙임 : '24 국외훈련 운영계획 참고자료 1부. 끝.